◇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 사유의 입증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며 근무 성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 리 령

◉총리령 제1632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8일

국 무 총 리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7조제2항 중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를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

} _1

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한다.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 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제7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제9호 를 제3호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른 성희롱	-, -	-16 -110		рост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기 년 에 급	에 묘 70 0	67 H 6	(선역

별지 서식 중"「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를 각각"「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2·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교육부령 제214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8일

교육 부장관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직무태만"을 "직무태만(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12.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별표 제1호다목 중 "직무대만"을 "부작위 또는 직무대만, 소극행정"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직무관 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 지 않은 행위"로 하며, 같은 표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